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5차 금융위원회('26.9.9.) 조치 의결 -

금융위원회(위원장: 이덕원)는 9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텍스터스튜디오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
<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>

회사명	대상자	최종 과징금 부과액
(주)텍스터스튜디오	회사	946.3백만원
	前 대표이사 등 2인	167.3백만원

※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'26.7.22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既 의결(붙임 참조)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구차성 (02-3145-7306)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선위·금융위 조치사항
(주)텍스터스튜디오	<회사> ① 매출 과대계상 (별도·연결: '16년 9,193백만원, '17년 8,707백만원, '18년 7,279백만원, '19년 △7,279백만원) - 회사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하여 가공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금융부채 과소계상 (별도·연결: '16년 3,929백만원, '17년 △3,929백만원) - 회사는 회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해야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외부감사 방해 - 회사는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	<회사 및 회사관계자> - 과징금 · 회사 946.3백만원 · 前대표이사 72.7백만원 · 前대표이사 94.6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대표이사 2인, 前담당임원) - 검찰고발(前대표이사 2인) - 시정요구
	<(주)텍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('16~'17)> ① 매출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별도·연결: '16년 1,904백만원, '17년 5,607백만원) - 감사인은 진행매출 및 매출채권 실재성에 대한 중요 감사절차인 외부조회 및 대체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<대주회계법인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 - (주)텍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